

법인 합병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합병되는 법인	대표자	생년월일			
	법인명	전화번호			
	업종	법인등록번호			
	사무소 소재지				
합병되는 법인	대표자	생년월일			
	법인명	전화번호			
	업종	법인등록번호			
	사무소 소재지				
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	대표자	생년월일			
	법인명	전화번호			
	업종	법인등록번호			
	사무소 소재지				

「골재채취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합병계약서 사본 2.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,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(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(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재무상태 표를 말합니다) 4.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.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국가기술자격증(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
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
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